

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유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,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**선임근거:** 2022년 2차 이사회 의결 (2022. 3. 16.)

2. **선임내용**

구분	성명	직위	선임일자
이사회 의장	찬 웅 씩(재키 찬)	비상임이사	2022. 3. 16.
선임사외이사	채수일	사외이사	2022. 3. 16.

3. **선임사유**

이사회 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안건, 운영 등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찬 웅 씩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.